

월요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팔길이 원칙’



이승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6개월 남겨둔 오늘까지도 전당의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다. 언젠가는 결정이 되겠지만, 6개월은 개관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광주시민들은 기약없는 정치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 참으로 애석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문화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집행하는데 준용되는 원칙으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있다. 이 표현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문화선진국들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이다.

이 기준은 영국이 대영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를 창설하면서 정치권력과 행정조직으로부터

문화예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문화예술 단체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간에 그 접촉의 거리를 ‘팔길이’보다 가까이하지 말라는 게 이 원칙의 요지다. 당시 영국은 지원을 빌미로 정부가 의도하는 문화예술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문화예술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러시아와 독일에서 시행된 국가 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판단하였고, 관료에 대한 예산가들의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자 ‘팔길이 원칙’을 도입하였다. 영국의 문화예술 정책이 자유방임에 가까운 정도로 ‘팔길이 원칙’을 준용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던 영국의 문화예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곤 한다. 정부는 공공 예술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기관을 운영할 때, ‘팔길이 원칙’을 준수한다고 천명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포함한 공공 영역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면서 ‘국립’이라는 명칭에도 ‘지역’을 따지는 정부를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팔길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팔길이 원칙’은 문화예술 기관의 운영이나 문화예술계의 지원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문화예술 정책이 독자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각 영역의 전문가들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집행기관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집행기관이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의 ‘팔길이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 기관의 존재 이유가 창조성의 발현을 위한 문화예술의 지원이라는 점에서도, 문화예술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적 기준이 아닌 문화적, 예술적, 인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지원과 진정한 의미의 ‘문화융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조’와 ‘문화융성’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세삼스럽게 ‘팔길이 원칙’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정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융성’이 무엇인지 깊은 생각이 잠기게 한다.

불멸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가 조성되고, 창의적 예술작품의 등장을 기대한다면 ‘팔길이 원칙’이 입각해서 문화예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문화선진국들은 문화예술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고, 국민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팔길이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문화선진국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의 향유를 정치적 목적보다는 정신적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문화융성’을 원하고 정부와 민간의 창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에서도 ‘팔길이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광주·전남 지역도 총기사고 우려 크다니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모두 8명이 살해되거나 숨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냥용 엽총이 범행에 사용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층 단독주택에서 전모 형과 형수, 남양파출소장 이모 경감 등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앞서 25일에도 세종시에서 강모(50)씨 거 경찰 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한 뒤 전 동거녀 가족 등 3명을 죽이고 자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4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서는 40대 운전자가 초등학교를 차량으로 친 뒤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에선 2009년 이후 일어난 총기 관련 사건·사고만 9건에 이른다. 또한 광주·전남의 총포 소지 허가 건수는 모두 2930건, 전남은 1만711건이나 된다. 광주·전남에서 모두 1만3천641정의 총기를 보유한 셈이다.

총기는 살상 도구로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총기 소지 허가 때 경찰이 적신감정 등을 확인한다지만 허가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조차 없다고 한다. 경찰의 총기 관리 인력도 태부족이다. 총기 담당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총기가 500정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뒤늦게 총기 소지 시간 및 허가 갱신기간 단축 등 규제 대책은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총기로 인한 범죄는 인명과 직결되는 만큼 완벽한 대책이 요구된다. 경찰은 인력을 늘리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총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새 수장들 책무는 혁신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20주년을 계기로 세계적인 비엔날레를 목표로 한 대대적인 혁신이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 윤철 전 감사원장을 이사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전국적인 명망가로 새 지도체제를 구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6일 광주의 역사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글로벌 비엔날레,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체성 실현, 이사진 구성의 혁신과 최고 의결기구로서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변화에 대한 각오나 열망은 이해하나 다소 상투적이다.

모든 기관·단체의 사례에서 보듯 혁신안은 장밋빛이다. 결국 그 성패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현에서 좌우된다. 문제점은 과감히 뜯어고치고 목표를 정하면 확실히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새 수장이 된 전 이사장과

박 대표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감사원장과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한 전 이사장은 중앙정부와 재계를 매개로 한 재정 확충과 기반 형성에 역량이 기대된다. 원로로서 비엔날레는 물론 갈등이 큰 광주 문화계 전반을 큰 스케일에서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박 대표는 문광부에서 전배가 굵어 문화행정에서 문화경영까지 꿰뚫고 있는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 광주에 유독 인색한 문광부와 기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최초’라고 주목받아온 광주 비엔날레의 독보적 위상이 약화된 지 오래됐다. 국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크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열악한 기반을 다시 가꾸기 위해 두 리더와 직원들의 맘이 필요하다.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법조칼럼

묻는 검사보다 듣는 검사 되기



최용희  
광주지검 검사

필자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15년 동안의 외국생활을 통해 애국심과 함께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갖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3년 동안의 군법무관 생활은 이를 더욱 강하게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명절 때 베란다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나라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검사로 임관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바빴고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으로 기억된다.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된 동네주민들 사이의 폭행 사건, 한평생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오다가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속여 이혼하게 한 후 재산을 모두 빼앗은 사기 사건 등등. 때면 새로운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났다.

똑같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고소인은 고소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저마다 억울한 사정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점이다. 최대한 모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력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변명해본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앞뒤

모두 자르고 사ian의 쟁점에 대해서만 나의 질문에 답변해주었으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었다. 1억원이 넘는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에게는 부양해야 할 식구가 여럿 있었으나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하였다. 아무래도 수사 과정은 업무상형량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피의자는 대부분 자백하였지만 말로만 잘못했다고 할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구속된 후 아무래도 피의자 가족의 근황과 앞으로의 생계 등이 신경 쓰였다. 피의자를 제차 소환하여 사건 외적인 부분이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의자는 눈물을 보이며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자신을 구속시켰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감사편지까지 교도소에 보내왔다.

어쩌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선처보다는 누구에게나 있는 ‘저마디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검사생활도 지금까지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순한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것만 말고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집행할 것이 아니라 ‘저마디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여 사건관계인들이 수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합치게 2년차 검사생활을 시작한다.

기고

조합장 동시 선거에 부처



강남경  
농협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인류 최초의 투표는 언제였을까?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리스에서 최초의 선거가 있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곤’이라는 임기 1년의 집정관을 선출하여 통치를 맡겼는데, 투표는 귀족들만 참여하였다고 한다.

사실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는 ‘보통선거권’의 역사가 실현된 것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서양에서도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얻은 것은 미국이 1920년,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1946년이다. 또한 미국에서 흑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1966년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3월 15일 미군정 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

초로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중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까지 투표는 가장 보편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축협 조합장 또한 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 선출방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1960~70년대에는 농협중앙회장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장을 임명하였다. 1980년 대 초에는 조합원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이 조합장 추천위원을 선출하며, 이렇게 선발된 추천위원들이 연기명 투표를 통해 조합장 후보를 추천하면 중앙회장이 임명하였다.

1984년부터는 조합장추천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대의원들이 모두 모여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선출하면 중앙회장이 임명하였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우리나라 전반에 퍼진 민주화·자유화 열기의 고조에 따라 농협운영에 있어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농민조합원의 기대가 커져 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1988년 12월에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농협법이 개정되었다.

2011년에는 농축협별로 다른 조합장

선거일자를 통일시킨 조합장동시선거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장동시선거제도는 조합장선거의 부정기적인 실시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동시선거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오는 11일에는 최초로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앞으로 4년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전국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전남은 152개 농축협 중 145개 농축협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7개 농축협은 합병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되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세간의 이목이 조합장 동시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선거 열기 또한 점점 가열되고 있다. 전남농협은 조합장 동시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권역별로 공명선거 추진 선거아카데미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농축협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과 홍보 전단지들을 만들어 배부했다.

또한 농축협 특별 현지점검을 통해 부정·불법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관리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인 조합원이다. 농축협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조합원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농축협의 주인이다. 조합장은 조합원이 출자하고 이용하는 농축협을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일 뿐이다.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가 사는 지역을 잘살게 해줄 사람을 조합원 스스로 뽑는 것이 조합장 동시선거다. 조합원에게는 가장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은 조합원 스스로 퇴출시켜야 한다.

조합장 동시선거가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운영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조합장 후보자들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건 조합원 자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공명한 조합장 동시선거는 조합원의 손에 달려있다.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無等鼓

조선시대 공무원인 관리들도 지금까지 ‘갑’의 위치를 누렸다. 하지만, 당시의 관리는 결보기와는 달리 대부분 박봉에 시달려야 했다. 봉급인 녹봉과 함께 토지인 과전(科田)을 지급받았던 조선 초, 관리들은 이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세를 대신 거둬오므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나라가 가난해지면서 명종 때부터는 녹봉만을 지급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녹봉이 말 그대로 쥐고 리만한데다 그나마도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이다. 재원이 빈약한 당시에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흉년이 들어 국가에서 특별 비용이 필요해지면 관리들의 녹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충당하곤 했다.

그럼에도 비교적 높은 직급이나 요직을 맡은 관리들은 먹고사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바로 ‘수증(受贖)’이라 불리는 숨겨진 수익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관으로 임명된 관리들은 의정부와 육조 등 중앙정부의 힘있는 관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임지로 부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임기가 끝나 중앙정부로 다시 돌아오

려면 이들 유력 인사에게 잘 보여줘야 했기 때문인데, 바로 여기에서 ‘수증’이라는 이름의 뇌물이 오가게 된 것이다. 지방관들은 명절이나 기념일 등 특별한 시기를 기화로 삼아 정부 예산이나 부정한 돈으로 마련한 뇌물을 수시로 중앙 관리들에게 바쳤고, 이는 조선시대 내내 관료사회에서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당시 임금들도 ‘녹봉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는 관리들의 불평을 ‘수증을 묵인하는 것’으로 무마했을 정도로 수증 리만한데다 그나마도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은 관리들의 생존비책이었던 셈이다.

을 초 국내 최대 기업인 한국전력의 당시에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흉년이 들어 국가에서 특별 비용이 필요해지면 관리들의 녹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충당하곤 했다.

그럼에도 비교적 높은 직급이나 요직을 맡은 관리들은 먹고사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바로 ‘수증(受贖)’이라 불리는 숨겨진 수익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관으로 임명된 관리들은 의정부와 육조 등 중앙정부의 힘있는 관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임지로 부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임기가 끝나 중앙정부로 다시 돌아오

‘갑’들이 사는 법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